

|       |             |
|-------|-------------|
| 의안번호  | 2201130     |
| 의 퇴 인 | 이수진의원       |
| 회 답 일 | 2024.07.25. |
| 추계번호  | 24C1493     |

# 간호법안

##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00만원, 2029년 400만원 등 5년간 총 2,000만원(연평균 400만원)으로 추계됨

○ 연 2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합계 | 연평균 |
|-------------------|------|------|------|------|------|----|-----|
| 안 제29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4    | 4    | 4    | 4    | 4    | 20 | 4   |

주: 1.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추후 위원회의 규모, 운영 방법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I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3조<br>(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p>▫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가 필요한 입원환자와 대상자 등에게 간호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사 등의 확보와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p> <p>▫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해야 함(제2항)</p> <p>▫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함(제3항)</p> | 의무규정 |

|   |                                |                                                                                                                                                                                                                                                                                                                                                                                                                                                                                                                                                                                                                                                                                                                                                                                                     |      |
|---|--------------------------------|-----------------------------------------------------------------------------------------------------------------------------------------------------------------------------------------------------------------------------------------------------------------------------------------------------------------------------------------------------------------------------------------------------------------------------------------------------------------------------------------------------------------------------------------------------------------------------------------------------------------------------------------------------------------------------------------------------------------------------------------------------------------------------------------------------|------|
| 2 | 안 제14조<br>(교육전담간호사)            | <p>▣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이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제1항)</p>                                                                                                                                                                                                                                                                                                                                                                                                                                                                                                                                                                                                                                                | 의무규정 |
|   |                                | <p>▣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p> <p>▣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4항)</p>                                                                                                                                                                                                                                                                                                                                                                                                                                                                                                                                                                                                                                                             | 재량규정 |
| 3 | 안 제24조<br>(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p>▣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등 인력(이하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방지,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별, 기관별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 등 실태에 관한 현황 조사</li> <li>2. 제5조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 교육 및 신규 간호인력의 취업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 지원</li> <li>3.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li> <li>4.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li> <li>5. 간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li> <li>6. 간호인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 해소 및 상담 지원</li> <li>7.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li> <li>8.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li> </ol> <p>▣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p> <p>▣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p> | 재량규정 |
| 4 | 안 제25조<br>(간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등)     | <p>▣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간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의료법」 제60조의2에 따른 의료인 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p>                                                                                                                                                                                                                                                                                                                                                                                                                                                                                                                                                                                                                        | 의무규정 |

|   |                                |                                                                                                                                                                                                                                                                                                                                                                                                                                                                 |      |
|---|--------------------------------|-----------------------------------------------------------------------------------------------------------------------------------------------------------------------------------------------------------------------------------------------------------------------------------------------------------------------------------------------------------------------------------------------------------------------------------------------------------------|------|
| 5 | 안 제26조<br>(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p>▣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p> <p>－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p>                                                                                                                                                                                                                                                                                                                                  | 의무규정 |
| 6 | 안 제28조<br>(실태조사)               | <p>▣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간호사들의 수급 변화에 관한 사항</li> <li>2.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간호사들의 현황 및 업무 실태에 관한 사항</li> <li>3. 간호사들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이직률, 직업 만족도 등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li> <li>4. 간호사들의 임금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li> <li>5.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li> <li>6. 간호사들의 인권침해 실태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간호사들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 의무규정 |
| 7 | 안 제29조<br>(간호정책심의위원회)          | <p>▣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간호사들의 수급, 양성 및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둔</p> <p>－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p>                                                                                                                                                                                                                                                                                                                     | 의무규정 |
| 8 | 안 제30조<br>(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제공 등) | <p>▣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에 있어, 서비스의 제공·확대, 제공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함(제1항)</p> <p>▣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제3항)</p>                                                                                                                                                                                                                                                          | 의무규정 |
|   |                                | <p>－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p>                                                                                                                                                                                                                                                                                                                                                                                                           | 재량규정 |
| 9 | 안 제35조<br>(교대근무지원)             | <p>▣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제1항)</p>                                                                                                                                                                                                                                                                                                                                                               | 의무규정 |
|   |                                | <p>▣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간호사를 대신하여 근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둘 수 있음(제2항)</p> <p>▣ 국가는 대체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p>                                                                                                                                                                                                                                                                                                                  | 재량규정 |

|    |                     |                                                                                                                   |      |
|----|---------------------|-------------------------------------------------------------------------------------------------------------------|------|
| 10 | 안 제37조<br>(경비 보조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등, 간호사중앙회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재량규정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연번 | 조·항(조제목)                           | 추계<br>여부 |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
| 1  | 안 제3조<br>(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br>책무 등)    | ×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 안 제14조<br>(교육전담간호사)                | ×        | ○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
| 3  | 안 제24조<br>(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br>및 운영)  |          |                                                      |
| 4  | 안 제25조<br>(간호정책종합계획의 수립<br>등)      | ×        | ○ 각 기관의 기본경비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           |
| 5  | 안 제26조<br>(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br>시행)    | ×        |                                                      |
| 6  | 안 제28조<br>(실태조사)                   | ×        | ○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
| 7  | 안 제29조<br>(간호정책심의위원회)              | ○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 8  | 안 제30조<br>(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br>의 제공 등) | ×        | ○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
| 9  | 안 제35조<br>(교대근무지원)                 | ×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10 | 안 제37조<br>(경비 보조 등)                |          |                                                      |

- (안 제3조·제35조)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
- 또한 간호사 교대근무에 대한 필요한 지원 또는 간호 대체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와 국고 지원 여부를 알 수 없음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으로 간호인력의 수급을 위한 ‘취업교육센터’를 운영을 통해 유희간호사 및 예비간호사의 취업을 연계<sup>1)</sup>하고 있으며, 간호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
- (안 제14조·제24조·제30조) 제정안에 명시된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은 현행 「의료법」의 조문을 갈음하여 동 제정안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안 제14조) 교육전담간호사에 관한 규정은 현행 「의료법」 제41조의<sup>2)</sup>의 내용을 갈음하여 명시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24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에 98억 3,300만원을 배정함<sup>3)</sup>
    - (사업 내용) 종합병원 필수의료 전담 간호사 양성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간호사 인건비(255명) 및 표준 교육프로그램 평가 연구비 등 지원
  - (안 제32조)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은 현행 「의료법」 제60조의<sup>34)</sup>의 조문을 갈음하여 동 제정안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1) 2022년 781명, 2023년 681명의 유희간호사 재취업 연계를 실시함

2) 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

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신규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중략>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3)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기존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2023년 기준 70억 300만원 배정)을 통해 국공립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왔으나, 최근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 등을 변경하여 신규 내역사업을 추진함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을 통해 간호인력 지원을 위한 아래 [표 2]의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 예시로, 안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호인력 취업교육을 위해 현재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중앙 1개소와 권역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대한 간호협회에 취업교육센터 운영비로 2024년 기준 33억 2,700만원을 배정함

[표 2]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 사업                | 2024년 예산 | 내용                                                                                              |
|-------------------|----------|-------------------------------------------------------------------------------------------------|
| 간호인력 취업지원         | 3,327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유휴(이직) 및 신규간호사 등의 취업 연계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여성 취업비율 제고, 지방 중소병원의 심각한 간호인력난 해소 |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 509      |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기관 지정 평가                                                            |
|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 5,800    |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임상실습 및 실기교육 강화를 통해 신규 신규간호사들의 병원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질 제고                              |
| 간호조무사 직무교육개발 및 지원 | 600      | 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성 향상 기반 조성을 위한 직무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
|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 9,833    |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2024년 신규사업으로 종합병원의 필수병동 교육전담간호사 255명 지원                                 |
| 보건의료인력 지원 전문기관 운영 | 551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시행('19.10월)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피해상담 및 지원 등 사업추진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연구  | 300      | 육성지원과목 전공의에 대한 지원 및 변화하는 보건 의료 환경에 적합한 보건의료인 양성·공급 등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선제적 제도 조사·연구 실시                |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발췌

- 4) 법률 제19421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2024.5.20. 시행예정)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와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별,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2.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3.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4.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
  5.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6. 그 밖에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후략>

- (안 제30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관한 조문은 현행 「의료법」 제4조의 25) 규정을 갈음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한시)”에 85억원을 배정함<sup>6)</sup>

– 참고로, 2023년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 수는 246만 6,537명이며, 총 입원료는 2조 6,364억원임

□ (안 제25조·제26조) 간호정책종합계획의 수립과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은 각 기관의 기본경비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제정안은 간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의료인 수급계획”<sup>7)</sup>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논의 중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이나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음

□ (안 제28조) 간호사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sup>8)</sup>에 명시된 보건의료인력 대상의 실태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이

5)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함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후략>

- 6)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대상 병원 확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공식화함
- 7) 위 4개의 계획은 각각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법」 상에 수립 근거를 두고 있으나, 수립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중앙부처 소관 계획은 아직 미수립 상태임

8) 제7조(실태조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함
  1.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3.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4.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므로 기존 예산 내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의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3년마다 수행하도록 명시되었으며, 가장 최근 조사는 2020년(2022년 발표) 간호사를 포함한 20개 직종<sup>9)</sup>에 대해 시행되었음
  - 다만, 기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대상에서 간호사등을 제외하고 별도의 실태조사를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안 제37조) 제정안에 따라 간호사등, 간호사중앙회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등을 보조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이자 현시점에 경비 보조 여부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신설(안 제26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함
  -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sup>10)</sup> 사례를 준용하며, 회의수당 외에 위원회 운영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sup>11)</sup>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심층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9)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10)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11) 참고로, 제정안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간호사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현행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현시점에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별도 개최 여부 및 빈도를 현실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회의 횟수와 위원회 위원 수 및 회의 수당의 곱으로 추계
  - (회의 횟수) 현행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sup>12)</sup>
  - (위원 정수) 제정안에 따라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위원회 정원을 15명으로 하며,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위촉 위원은 10명으로 가정
    - － 안 제27조제3항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므로, 위원장 1인과 관계기관 공무원 4인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sup>13)</sup>
  - (회의 수당)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sup>14)</sup>을 준용하여 1회 20만원으로 하며, 추계기간 중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00만원, 2029년 400만원 등 5년간 총 2,000만원으로 추계됨

12)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 2회와 분과위원회 2회, 전문가토론회 3회 등을 명시하였으나, 실제 회의는 1회만 개최되었음. 참고로, 2021년 1월에 1기 위원회가 구성된 후 2023년 6월까지 총 3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23년 8월에 2기 위원을 위촉하고 2023년 1차 회의를 개최함

13) 제2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총 7인의 공무원이 임명됨

14)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표 3]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합계 | 연평균 |
|----------------------|------|------|------|------|------|----|-----|
| 안 제26조에 따른<br>추가재정소요 | 4    | 4    | 4    | 4    | 4    | 20 | 4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V. 작성자

###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사회비용추계과 | 임슬기 | 이진우 |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임슬기 | 02-6788-4740 | sg.lim@assembly.go.kr |